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선발규정



사단
법인

대한골프협회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수한 골프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선발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지도자를 말한다.

② 국가대표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의2호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 또는 "KGA"라 한다)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 국가상비군은 주니어국가상비군을 포함한 국가상비군선수 및 국가상비군지도자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국가대표선수에는 “협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⑤ 국가대표지도자 및 국가상비군지도자는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훈련기간,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선수를 지도·관리하기 위해 협회에서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당협회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주니어국가상비군)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4조 (선발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 해 선수등록을 필한 자 중 본 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선발 자격을 부여한다.

제 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협회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심의 중인 자
4.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행위로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성추행, 성희롱 등 성(性)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가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6.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7.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 6조 (선발구분)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그리고 주니어국가상비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초등부 제외)
2. 주니어국가상비군 (5~6학년 초등부)

제 7조 (특별선발) 주요 국제대회에 파견 선수선발은 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수선수와 주요 대회에서 우승 등의 탁월한 성적을 기록하고, 잠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회장의 승인으로 특별 선발할 수 있다.

제 8조 (선발시기) 선수선발은 당해년도 10월~11월 중에 제11조(선발방법)에 의거 선발한다.

제 9조 (선발인원) 선발 인원은 다음의 정수 및 약간명 이내로 한다.

구분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주니어국가상비군
남	6명	약간명	3명
여	6명	약간명	3명
합	12명	약간명	6명

제10조 (선발대회와 배점) 선발대회는 협회 및 연맹(초등,중고,대학)에서 주최·주관하는 협회 승인대회를 기준으로 하며, 대회 선정과 폐지, 배점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선발대회 및 배점은 아래와 같으며, 순위별 배점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배점	선 발 대 회	
	국내대회	국제대회
250점	.한국오픈 .한국여자오픈 .매경오픈	.아시안게임 개인전 .세계아마추어골프팀선수권 개인전
200점	.한국아마추어선수권 .한국여자아마추어선수권	.아시아태평양골프팀선수권 개인전 .아시아태평양아마추어챔피언십(AAC, WAAP)
150점	.전국체육대회 개인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인순위 .한국주니어 .호심배 .송암배 .매경솔라고배 .KB금융그룹배 .베어크리크배	.퀸시리키트컵 개인전 .세계대학선수권(유니버시아드) 개인전
100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박카스배 개인전 .드림파크배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회장배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회장배 .한국대학골프연맹회장배	
50점	.영건스매치플레이 .초·중·고, 대학 연맹 주최·주관 승인 대회 (단, 당해년도 사업승인 대회에 한함) .시도골프협회장배 (주1: 시도골프협회에서 KGA에 사전 승인을 받은 점수부여방법에 따라 점수 부여 가능 (주2: 대학부, 일반부 제외)	

② 상기 제①항의 선발대회 중 연맹 및 시도골프협회 주관 대회가 당 협회(대한골프협회) 주관 대회 일자(예선전포함)와 중복되는 경우 선발대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협회 주관 대회 일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되어 연맹 대회와 중복되거나, 부별(남자부, 여자부) 일정이 틀릴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연맹 대회를 선발대회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별표 제1호의 순위별 점수 분배 시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해당 순위의 점수를 합산하여 인원수만큼 나눈 뒤(소수점 반올림) 동순위자에게 각각 부여한다. 단, 최저순위에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최저점수를 해당 선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④ 오픈경기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성적을 합산한 종합순위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단, 종합순위 21위 이하의 아마추어 선수 전원에게는 10점을 부여하며, 아마추어부 1위, 2위, 3위에게는 30점, 20점, 10점 순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11조 [선발방법]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주니어상비군) 선발은 아래 ①항에 따라 위원회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에 한해 10월말 국가대표를 우선 선발한 후, ②항에 따라 선발한다. (단, 주니어국가상비군은 제10조 ①항의 대회에서 얻은 고득점 순에 따라 남녀 각 3명 선발)

① 국가대표 우선선발 :

1. 별표 제2호에 규정된 조건을 최소 3개 이상 충족시 차기년도 국가대표로 우선 선발한다.
2. 선발 최대인원은 3명이며, 우선 선발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선수선발은 선발전을 통해 선발한다.
3. 우선선발 인원이 3명을 초과할 경우, 조건(1번~8번) 중 다수 조건을 충족시킨 선수를 우선 선발하며, 충족 조건의 수가 동일할 경우 세부 항목이 있는 조건(2번~8번)을 중복(다수) 달성한 선수를 우선 선발한다. 그래도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발한다.

② 선발전 :

1. 현 국가대표와 당해 년도 남녀 각 부(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배점 점수 상위자, 월드랭킹 상위자들을 대상으로 선발전 자격을 부여한다.
2. 선발전은 10월 말~11월 초에 실시하며, 우선선발된 국가대표를 제외한 인원을 선발전 성적순으로 선발하여 차기년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자격을 부여한다.
3. 선발전 일정이 확정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전 요강을 발표하여야 하며, 선발전 관련 조건은 선발전 요강을 통해 확정한다.
4. 선발전 참가 대상자의 자격과 인원은 아래와 같다.

자 격	남 자	여 자
당해연도 국가대표	약간명	약간명
당해연도 중등부 배점 점수 상위자	6명	6명
당해연도 고등부 배점 점수 상위자	8명	8명
당해연도 대학부 배점 점수 상위자	6명	6명
월드랭킹 100위 이내	약간명	약간명

주) 참가 자격 인원내라도 최소 점수 100점 이상일 때만 선발전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단, 경기력향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최소 점수 및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①항, ②항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결과가 발표된 후 즉시 승낙 또는 포기의사를 협회로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선발전 참가 대상선수는 참가신청서 접수시 필히 소속 시도협회장의 확인(직인 날인)을 받아 접수하여야 한다. 협회장 확인(직인)이 누락된 경우 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다.
- ④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발표된 최종선발 명단에서 추후 결원이 생기더라도, 그 결원에 대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

제12조 (임명과 활동기간) 회장 승인으로 최종 임명된 선수의 활동기간은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차기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선수의 활동기간 중 결원 또는 증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며, 보결 선수의 활동기간은 전임 선수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선수의 의무)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그리고 주니어국가상비군에 선발된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은 물론 협회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품행을 단정히 하고, 물과 에티켓을 지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기량향상과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존경받는 골프선수가 되도록 노력한다.
3. 아마추어자격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활동 기간 중 프로로 전향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격을 포기하여야 할 경우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선수는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응하여야 한다.
4. 모든 선수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합숙훈련 및 소집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불참시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감독 또는 코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협회에서 지원받은 선수단 물품은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6. 지도자(코치)의 기술 지도를 포함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7.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 이외의 국내·외 대회에 출전을 원할 경우 사전에 감독 또는 코치의 참가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의 최종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
(단, 산하연맹과 시도대회 출전은 예외)

제14조 [포상 및 징계]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그리고 주니어국가상비군으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기간 포상 및 징계는 상벌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그리고 주니어국가상비군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국위 선양에 현격한 공헌을 한 선수
 2. 주요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3. 협회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대표(상비군)팀의 인화 단결에 모범이 된 선수
 4. 기타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 추천을 받은 선수
- ② 징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그리고 주니어국가상비군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제13조 선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수
 2. 국가대표(상비군)으로 활동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가대표(상비군)팀의 인화단결을 저해한 선수
 3. 협회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은 선수

제15조 [선발기록자료 보존과 폐기] ① 선발기록자료는 당 사무처에 5년간 보존하며, 보존기간 기산일은 처리.완료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 ② 회장은 다음의 각호에 따라 기록 보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정책 또는 사업 내용이 변경.조정되어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각종 감사, 수사 또는 소송과 관련되어 그 종료 시까지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폐기하여야 하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문서세단기 등으로 절단하거나 원형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완전 소각시킨다.

부 칙 (1996.04.02.)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7.18)

제 1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3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1.09.19.)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제143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22.)

제 1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7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08.20.)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제147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9.13.)

제 1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8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11.26.)

제 1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8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5.03.20.)

제 1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51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6.04.01.)

제 1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7.03.23.)

제 1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2018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부터 적용).

부 칙 (2018.03.15.)

제 1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2019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부터 적용).

[별표 제1호]

순위에 따른 배점표

250점 대회		200점 대회		150점 대회		100점 대회		50점 대회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1	250	1	200	1	150	1	100	1	50
2	200	2	160	2	120	2	80	2	40
3	160	3	130	3	98	3	65	3	33
4	130	4	110	4	83	4	55	4	28
5	110	5	90	5	68	5	45	5	23
6	100	6	80	6	60	6	40	6	20
7	90	7	70	7	53	7	35	7	18
8	80	8	60	8	45	8	30	8	15
9	70	9	50	9	38	9	25	9	13
10	60	10	45	10	34	10	23	10	11
11	50	11	40	11	30	11	20		
12	45	12	36	12	27	12	18		
13	43	13	34	13	26	13	17		
14	40	14	32	14	24	14	16		
15	38	15	30	15	23	15	15		
16	35	16	28	16	21	16	14		
17	33	17	26	17	20	17	13		
18	30	18	24	18	18	18	12		
19	28	19	22	19	17	19	11		
20	25	20	20	20	15	20	10		

[별표 제2호]

국가대표 우선선발 조건표

- 아래 조건 중 당해연도 10월말 기준 3개 이상 충족 시 차기년도 국가대표로 최대 3명 까지 우선 선발한다.(선발전 면제)
- 우선선발인원이 3명을 초과할 경우, 조건(1번~8번) 중 다수 조건을 충족시킨 선수를 우선 선발하며, 충족 조건의 수가 동일할 경우 세부 항목이 있는 조건(2번~8번)을 중복(다수) 달성한 선수를 우선 선발한다. 그래도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발한다.
- 선발인원이 없을 경우 선발전을 통해 국가대표 전원을 선발한다.

조건	남 자	여 자
1	○ R&A 월드아마추어골프랭킹 50위 이내	○ R&A 월드아마추어골프랭킹 30위 이내
2	○ KGA 주관 프로대회 5위 이내 (한국오픈, 매경오픈)	○ KGA 주관 프로대회 5위 이내 (한국여자오픈)
3	○ KGA 주최.주관 아마추어대회 우승 (허정구배, 호심배, 송암배, 매경아마, 전국체전)	○ KGA 주최.주관 아마추어대회 우승 (강민구배, 호심배, 송암배, 매경아마, 전국체전)
4	○ KPGA 주관 프로대회 3위 이내	○ KLPGA 주관 프로대회 3위 이내
5	○ 세계아마추어골프팀선수권 개인전 7위 이내 ○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	○ 세계여자아마추어골프팀선수권 개인전 3위 이내 ○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
6	○ 아시아태평양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 및 준우승 (노무라컵, AAC)	○ 아시아태평양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 및 준우승 (퀸시리키트컵, WAAP)
7	○ 해외 내셔널타이틀아마추어선수권 개인전 (대만/일본/호주-우승, 미국/영국-준우승)	○ 해외 내셔널타이틀아마추어선수권 개인전 (대만/일본/호주-우승, 미국/영국-준우승)
8	○ 해외 프로투어 개인전 - PGA 및 유럽 : 본선 진출 - 일본 및 호주 : 15위 이내	○ KGA 해외파견 프로대회 - LPGA 및 유럽 : 15위 이내 - 일본 및 호주 : 10위 이내